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037
----------	------

제출연월일 : 2024. 6. 27.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보고)”를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u>보고</u>)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45조(<u>통보 등</u>) ① ----- ----- ----- ----- ----- <u>통보</u>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